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76

발의연월일: 2024. 10. 7.

발 의 자:조계원·김문수·강준현

민형배 • 박해철 • 김우영

양문석 · 김기표 · 박민규

윤준병 • 박희승 • 허성무

이기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오프라인 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제40조제1호 및 제42 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을 "입장권등을"로 한다.

제4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제4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몰수·추징) 제40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생 략)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u>「정보통신망 이</u>	② <u>입장권등을</u>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	
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1. ~ 6. (생 략)	$2. \sim 7.$ (현행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와 같음)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u><</u>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42조의2(몰수·추징) 제40조제 <u>1</u>
	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 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